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「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」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고, 지식재산처 정원 105명(5급 105명)을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11. 6. 시행)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등 25개과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,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,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(9급 2명)을 과학기술·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,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며, 지식재산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0항제10호 중 “부정경쟁행위”를 “부정경쟁행위 등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컴퓨터 제어”를 “양자 컴퓨팅”으로, “컴퓨터 메모리 회로”를 “컴퓨터 메모리 제어”로 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2명(6급 2명)”을 “3명(6급 3명)”으로 한다.

제6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) 「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디지털융합심사국: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, 사물인터넷심사과, 바이오기반심사과, 지능형로봇심사과, 자율주행심사팀,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, 바이오의약심사팀, 헬스케어기기심사팀,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
2. 전기통신심사국: 통신심사과, 방송미디어심사팀
3. 화학생명심사국: 유기화학심사과, 약품화학심사과, 기초재료화학심사과, 이차전지소재심사과, 고분자섬유심사과, 의료기술심사과
4. 기계금속심사국: 자동차심사과, 동력기술심사과, 운송기계심사과,

재료금속심사팀

5. 반도체심사추진단: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, 반도체설계심사과, 반도체소재심사팀,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

별표 1 중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“786”을 “681”로, 공업서기보·보건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·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“20”을 “22”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25”를 “23”으로 하고, 전문경력관 나 군(번역 담당) 3 다음에 “수석전문관·공업전문관·농업전문관·임업전문관·수의전문관·해양수산전문관·기상전문관·보건전문관·의료기술전문관·의무전문관·약무전문관·환경전문관·항공전문관·시설전문관·전산전문관·방송통신전문관·행정전문관 또는 사서전문관 105”를 신설한다.

별표 2 중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“820”을 “715”로, 공업서기보·보건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·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“20”을 “22”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25”를 “23”으로 하고, 전문경력관 나 군(번역 담당) 3 다음에 “수석전문관·공업전문관·농업전문관·임업전문관·수의전문관·해양수산전문관·기상전문관·보건전문관·의료기술전문관·의무전문관·약무전문관·환경전문관·항공전문관·시설전문관·전산전문관·방송통신전문관·행정전문관 또는 사서전문관 105”를 신설한다.

문관·수의전문관·해양수산전문관·기상전문관·보건전문관·의료기술전문관·의무전문관·약무전문관·환경전문관·항공전문관·시설전문관·전산전문관·방송통신전문관·행정전문관 또는 사서전문관 105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「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 합격자 수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수에 미달하여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2029년 11월 5일까지 지식재산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전직시험 이후 위의 존속기간까지 「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영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가 추가로 발생할 때마다 발생한 합격자 수만큼 감소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지식재산보호협력국) ① ~ ⑨ (생 략) ⑩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9. (생 략) 10. 그 밖에 <u>부정경쟁행위</u> 조사에 관한 사항	제9조(지식재산보호협력국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----- <u>부정경쟁행위</u> 등 -----
제15조(전기통신심사국) ① ~ ③ (생 략) ④ 컴퓨터심사과장은 <u>컴퓨터 제어</u> , 컴퓨터 보안, <u>컴퓨터 메모리 회로</u> , 컴퓨터 입출력 및 컴퓨터 응용 분야의 특허출원 ·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 ⑤ ~ ⑦ (생 략)	제15조(전기통신심사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양자 컴퓨팅</u> ----- <u>컴퓨터 메모리 제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3조(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· ② (생 략) ③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분쟁 대응 및 소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7명(5급 7명),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<u>2명(6급 2</u>	제23조(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명(6급 3</u>

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<신 설>

명)-----
--.

제25조의2(전문직공무원 정원
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)
「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
제」 제37조의2제2항 후단에 따
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
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디지털융합심사국: 인공지능
빅데이터심사과, 사물인터넷
심사과, 바이오기반심사과, 지
능형로봇심사과, 자율주행심
사팀,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,
바이오의약심사팀, 헬스케어
기기심사팀, 헬스케어데이터
심사팀
2. 전기통신심사국: 통신심사과,
방송미디어심사팀
3. 화학생명심사국: 유기화학심
사과, 약품화학심사과, 기초재
료화학심사과, 이차전지소재
심사과, 고분자섬유심사과, 의
료기술심사과
4. 기계금속심사국: 자동차심사
과, 동력기술심사과, 운송기계
심사과, 재료금속심사팀

	5. <u>반도체심사추진단: 반도체 제조 공정심사과, 반도체 설계심사과, 반도체 소재심사팀, 반도체 조립공정심사팀</u>
--	---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지식재산처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.	.	.	
.	.	.	
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 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해양수산 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 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 관 · 약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 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행정 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	<u>786</u>	<u>681</u>	-105
.	.	.	
.	.	.	
공업서기보 · 보건서기보 · 시설 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통신 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	<u>20</u>	<u>22</u>	+2
.	.	.	
.	.	.	
사무운영서기보	<u>25</u>	<u>23</u>	-2
.	.	.	

• <u>수석전문관 · 공업전문관 · 농업 전문관 · 임업전문관 · 수의전문 관 · 해양수산전문관 · 기상전문 관 · 보건전문관 · 의료기술전문 관 · 의무전문관 · 약무전문관 · 환경전문관 · 항공전문관 · 시설 전문관 · 전산전문관 · 방송통신 전문관 · 행정전문관 또는 사서전문관</u>	• <u><신 설></u>	• <u>105</u>	+105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[별표 2]

지식재산처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 •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 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해양수산 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 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 관 · 약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 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행정 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• • 공업서기보 · 보건서기보 · 시설 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통신 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• 사무운영서기보 • •	• • <u>820</u> • • <u>20</u> • <u>25</u> • •	• • <u>715</u> • • <u>22</u> • <u>23</u> • •	-105 +2 -2

<u>수석전문관 · 공업전문관 · 농업 전문관 · 임업전문관 · 수의전문 관 · 해양수산전문관 · 기상전문 관 · 보건전문관 · 의료기술전문 관 · 의무전문관 · 약무전문관 · 환경전문관 · 항공전문관 · 시설 전문관 · 전산전문관 · 방송통신 전문관 · 행정전문관 또는 사서전문관</u>	<u><신 설></u>	<u>105</u>	+105
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